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분말커피류는 20%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2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커레이션 케이크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포장내용물 80ml 또는 80g 이하의 제외)	15% 이하	2차 이내	
단위 제품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잡화류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 (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3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의류	와이셔츠류·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종합 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25% 이하	2차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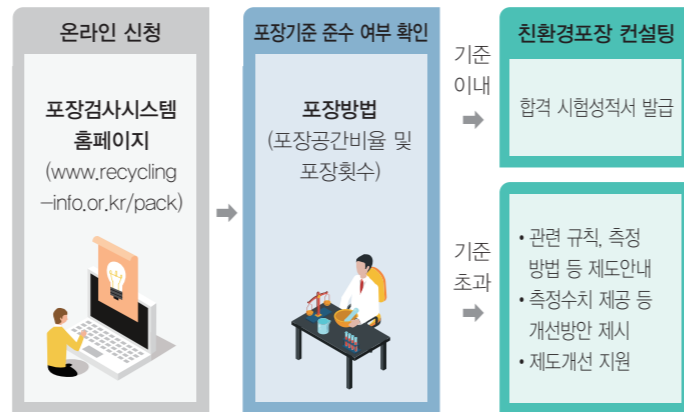
※단위제품 :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

※종합제품 :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

※위 표에도 불구하고 1차 연성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 공간비율을 35% 이하로 하고, 2016년 10월 10일 이후 제조·수입된 화장품류 제품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기준을 적용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종합제품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35% 이하 (향수는 제외한다)	2차 이내

친환경포장 컨설팅 서비스 제공



※성적서 발급 비용 외 기타 비용 없음

컨설팅 대상

- ① 제품 포장설계 단계의 “자제품질관리용” 검사 의뢰 제품
- ② “자제품질관리용” 검사 의뢰 제품 중 기준 초과 제품
- ③ 포장검사 명령을 받은 “관공서제출용” 검사 의뢰 제품

컨설팅 주요내용

- 관련 규칙,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 등 제도 안내
- 측정수치 제공 등 포장개선 방안 제시
-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지원

한국환경공단은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포장검사, 교육·홍보, 제도개선,
친환경포장컨설팅** 등
포장검사제도를 운영합니다.



포장검사시스템

자연 가까이 사랑 가까이

포장재질·포장방법 검사



포장재질·포장방법 검사란?

1993년 시행된 제도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관해 검사하는 제도



■ 포장재질검사 : 분리배출 표시를 위한 포장재의 재질검사(합성수지 재질이나 그 밖의 복합재질로 된 제품·포장재만 해당) 및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사용 여부 검사 [PVC를 사용한 첩합(레이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사용 금지, 예: 계란·메추리알, 튀김식품·김밥류·햄버거류·샌드위치류]

■ 포장방법검사(과대포장검사) :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등 7개 제품군 23개 품목에 대해 포장공간비율(포장용기 대비 빈 공간 비율, 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포장용기에 담거나 포장재로 씌운 횟수, 2~3차 이내) 기준 준수 여부 검사

관련 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676호)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환경부고시 제2016-122호)

포장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본사 및 전국 지역본부·지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포장검사 수수료 및 소요기간

검사 수수료

구분	시료당 수수료(원)	비고		
포장재	포장재질	분리배출표시	50,000	
		PVC 유해물질	52,000	
	포장공간	단위제품	35,000	측정대상 구성품 5개 이상
			45,000	
		종합제품	44,000	측정대상 구성품 5개 이상
			57,000	
포장횟수	단위/종합제품	18,000		
성적서	영문 성적서	4,000		
	재발급 성적서	2,000		

※부가세 10% 별도, 포장검사시스템 회원가입 시 1일 1회 2,500원 할인

- 검사기간 : 검사수수료 입금일 기준 최대 7일 소요 (입금확인 후, 순차적으로 검사 진행)
- ※관공서 제출용 검사성적서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 신청자 요청에 따라 별도 급행료 등 추가 부담 없이 우선검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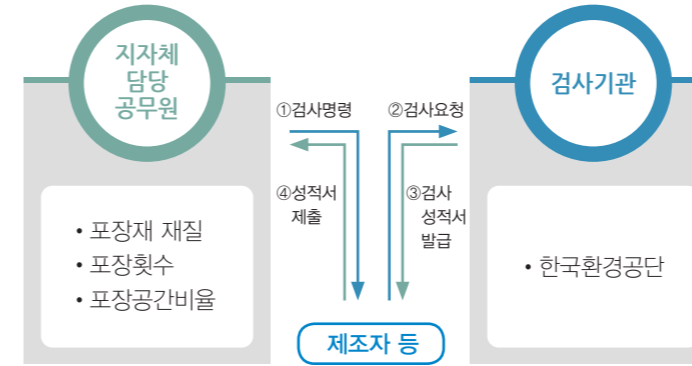
포장검사절차



- 신청자 : 포장검사시스템 홈페이지(www.recycling-info.or.kr/pack)에서 온라인 신청 후, 제품(시료) 발송
- 공단 : 제품 수령 후, 접수 및 견적서(수수료) 팩스 송부
- 신청자 : 견적서(수수료) 확인 후, 검사수수료 납입
- 공단 : 입금 확인 후, 검사 진행 및 세금계산서(영수) 발행
- 공단 : 검사 완료 후, 시험성적서 및 시료 택배반환처리(착불)
※제품손상 등의 사유로 시료폐기를 원하는 경우, 별도 폐기요청(성적서 등기발송)



과대포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형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이 성행하기 쉬운 명절(설·추석), 연말연시, 특정기념일 및 환경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
-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대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포장검사명령
-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검사결과 기준초과로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과태료 부과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00 만원	200 만원	300 만원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음

포장검사업무 지역별 연락처

구분	연락처	FAX	주소
본사	032-590-4917	032-596-492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환경품질검사팀
수도권 동부 지역본부	031-590-0622	0505-822-7810	경기도 성남시 장미로 42 (아탑동 342-1) 리더스빌딩 3층 자원순환지원팀
강원지사	033-240-9520	033-240-9501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8층 (온의동, 대한교원공제회) 자원순환지원팀
수도권 서부 지역본부	02-3153-0503	02-3153-0599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8길 82(등촌동) 강서아이티밸리 7층 자원순환지원팀
부산울산 경남 지역본부	051-366-3704	051-366-3719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681번길 34 자원순환지원팀
대구경북 지역본부	053-580-7525	053-591-7347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0(대천동) 자원순환지원팀
충청권 지역본부	042-939-2398	042-939232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6(둔산동) 자원순환지원팀
충북지사	043-219-6432	0505-822-78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150번길 73 (울랑동, KT충북본부) 자원순환지원팀
호남권 지역본부	062-949-0758	062-959-6926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7(우산동) 자원순환지원팀
전북지사	063-530-0810	0505-822-7845	전라북도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672-26 (하북동) 자원순환지원팀
제주지사	064-725-6547	064-721-556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영평동) JDC 엘리트B/D 503호